

社團法人 韓國圖書館協會定款

(改正檀紀 4289年 4月 20日)

第一章 總 則

第1條 本會는 社團法人 韓國圖書館 協會라 稱한다.

第2條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內에 둔다

第3條 本會는 全國의 公共圖書館, 大學圖書館, 校園圖書館, 特殊圖書館, 其他讀書施設의 提携下에 圖書館事業의 發展을 圖謀함으로써 韓國의 文化向上에 貢獻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章 事 業

第4條 本協會는 前條의 目的을達成하기 為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圖書館의 管理, 運營, 技術에 關한 調査, 研究 및 그 實施促進
2. 機關誌 및 圖書館과 讀書에 關한 資料의 編刊
3. 圖書館職員의 教育 및 待遇改善
4. 圖書館의 普及 및 設立經營의 指導
5. 良書의 推薦 選定 및 其普及
6. 讀書運動의 推進 및 指導
7. 圖書館用品의 規格화 및 其普及
8. 圖書館關係資料室의 設置
9. 各國의 圖書館團體 및 關係機關과의 連絡提携
10. 其他 本會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第三章 會 員

第5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의 4種으로 한다.

1. 普通會員… 圖書館其他讀書施設의 職員으로서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者
2. 特別會員… 圖書館, 學校, 其他讀書

施設을 가진 囘體

3. 贊助會員… 本會의 事業을 贊助하는 個人 또는 囘體

4. 名譽會員… 本會에 貢獻이 있는 人士로서 理事會에 推薦하는 者

第6條 本會의 會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入會를申請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7條 本會의 會員은 所定의 會費를 納入하여야 한다.

但, 會費의 等級과 金額은 理事會에서 定하며 名譽會員에게는 會費를 받지 아니 한다.

第8條 本會의 會員은 脫退 및 除名에 依하여 그 資格을喪失한다.

但, 除名處分은 會員으로서 的義務를 履行치 않는 者 또는 本會의 名譽를 損傷한 者에 對하여 理事會의 議決에 依하여 行한다.

第四章 任 員

第9條 本會에 下의 任員을 둔다

1. 名譽會長 1人
2. 會長 1人
3. 理事 若干人 (內 專務理事 1人, 常務理事若干人)
4. 監事 2人
5. 評議員 若干人
6. 顧問 若干人
7. 參與 若干人

第10條 本會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名譽會長은 本會의 事業을 支援協力한다.

2. 會長은 本會를代表하여 會務를統裁 한다.
3. 專務理事는 會長을補佐하여 會務를總理하며 會長有故時에는 그任務를代行 한다.
4. 常務理事는 理事會의 委任을받아 常務를處理한다.
5. 理事는 理事會를構成하여 第20條의事項을 審議執行한다.
6. 監事는 本會의會計를 每年2回以上 監查하여 總會에報告한다. 監事는 理事會에出席하여 發言할수 有되 表決權은 없다.
7. 評議員은 評議員會를構成하여 第18條의事項을 議決한다.
8. 顧問은 本會의諮問에應한다.
9. 參與는 本會의重要한會務에 參劃하여 專門分野에關한諮問에應한다.
參與는 理事會에出席하여 發言할수 有되 表決權은 없다.

第11條 本會任員의 選舉方法은 다음과같다.

1. 名譽會長은 文敎部長官으로한다.
2. 理事, 監事는 評議員會가 評議員 및 普通會員中에서 選舉하여 總會의 承諾을 얻어야한다.
3. 前項外에 第27條의 各部會의 代表者는 理事로한다.
4. 會長, 專務理事, 常務理事는 理事中에서互選한다.
5. 評議員은 特別會員의 代表者로한다.
6. 顧問은 教育及 文化事業에 功勞가 顯著한者 또는 學識經驗이 豐富한者中에서 理事會가 推薦하여 會長이推載한다.
7. 參與는 圖書館技術専門家中에서 理事會外推薦하여 會長이委嘱한다.

第12條 本會任員의任期는 2年으로하되重任할수 있다.

但, 任員中缺員이 생길때에는 理事會에서 補選하여 補任者の任期는前任者の殘餘期間으로한다.

第13條 本會의任員은 任期滿了時라도 後任者가決定될때까지 그任務를執行한다.

第五章 會 議

第14條 本會의會議는 總會, 評議員會, 理事會의 3種으로하여 會長이 이를召集하고 그議長이된다.

但, 理事會의議長은 輪番制로 할수 있다.

第15條 本會의總會는 特別會員의 代表者, 普通會員 및個人의 資助會員으로構成하고 會員分5之1以上의 出席으로成立하여 다음과같이開催한다.

1. 定期總會는 每年 1回年度初에開催한다.
2. 臨時總會는 다음의境遇에開催한다.
 - (1) 理事會 또는 評議員會에서 議決할때
 - (2) 監事外連署로要求할때
 - (3) 會員10分1之以上이 議題를 明示하여 要求할때

第16條 總會의機能은 다음과같다.

1. 本定款에서定해진事項
2. 事業報告의 審議
3. 豊算, 決算의 承認
4. 定款의 變更
5. 其他重要한事項의 議決

第17條 本會의評議員會는 다음과같이 開催하여 評議員3分1之以上的 出席으로成立한다.

1. 定期評議員會는 每年 年度初에開催한다.
2. 臨時評議員會는 다음의境遇에開催한다.
 - (1) 理事會에서 議決할때
 - (2) 評議員 5分1之以上이 議題를 明示하여 要求할때

第18條 評議員會의機能은 다음과같다

1. 本定款에서 정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3. 기타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 19 조 本 회의理事會는 다음과 같이 개최
하여理事過半數出席으로成立한다.

1. 회장이 필요로 인정할 때

2.理事 3人以上이 요구할 때

但, 緊急을 要할 때는 회장이書面 또는 口頭
로서理事의 意見을 얻어理事會에 대화
수 있다.

제 20 조理事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本定款에서 정한 사항

2. 總會 및 計議員會에서 議決한 사항의 執 行

3. 定款의 變更案 및 其他總會에 附議한 案件의 審議

4. 其他重要社會務의 審議執行

제 21 조 本 회의 諸會議의 議事는 出席者過半
數로서 決定하여 可否同意일 때는 議長
이 決定한다.

제 22 조 出席會員이 出席하지 아니한 他會員
의 表決權을 委任 받았을 때는 이를 認定한다.

第六章 事務局

제 23 조 本 회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事務
局을 設置하고 다음의 職員을 둘 수 있다.

1. 事務局長 1人, 幹事若干人, 書記若干人

事務局長은理事會의 推薦으로 幹事 및
書記는 事務局長의 推薦으로 각各會長
이任命한다.

事務局長은理事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되 表決權은 없다.

第七章 財政

제 24 조 本 회의 經費는 다음의 收入金으로充
當한다.

1. 會費

2. 國庫補助金

3. 寄附金及는 贊助金

4. 基本財產收入金

5. 事業收入金

6. 其他收入金

제 25 조 本 회의 財政上緊急을 要할 때는理事
會의 議決로서豫算의 變更를 할 수 있다

但, 次期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제 26 조 本 회에 基本財產을 둔다

但, 基本財產의 管理方法은理事會에서 定
한다.

제 27 조 本 회의 會計年度는 政府會計年度
와 같다.

第八章 部會 및 委員會

제 28 조 本 회에 下記部會를 둘 수 있다.

1. 公共圖書館部會

2. 大學圖書館部會

3. 學校圖書館部會

4. 特殊圖書館部會

5. 其他必要한 部會

제 29 조 本 회는理事會의 議決에 依하여 必要
한 委員會를 둘 수 있다.

第九章 解散及其他

제 30 조 本 회를 解散코자 할 때는 總會의 議
決와 文教部長官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제 31 조 本 회를 解散할 때의 殘餘財產은 總
會의 議決에 依하여 本 회와 類似한 目的을 가
진 公益團體에 寄附한다.

제 32 조 本定款은 第 30 조의 手續을 經하지 아
니하면 變更할 수 없다.

제 33 조 本定款의 施行에 必要한 規程 및
細則은 別途로理事會에서 定할 수 있다.

附 則

本定款은 檢紀 4289年 4月 20日부로 施
行한다

社團法人 韓國圖書館協會部會規程
(改正 4282年 6月 9日)

제 1 조 本 協會(以下圖協이라稱한다)는 定
款第 28 조에 依하여 다음의 部會를 둔다.

(→ 公共圖書館部會)

- (二) 大學圖書館部會
- (三) 學校圖書館部會
- (四) 特殊圖書館部會
- (五) 其他必要部會

第 2 條 各部會의 事務所는 部會長이 所屬하는 圖書館 내에 둔다.

第 3 條 各部會는 理事會 및 部會相互間의 緊密한 連絡下에各自의 分野에 共通한 問題의 研究, 調查 및 그 實施促進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4 條 各部會는 圖協會員으로서 所屬別로 構成한다.

第 5 條 各部會에 다음 任員을 둔다.

- (一) 部會長 1人
- (二) 幹事 若干人

各部會長은 定款第11條 3項에 依하여 圖協理事로 한다.

第 6 條 各部會長은 各部會의 總會에서 推薦하여 圖協會長이 委嘱하고 幹事는 部會長이 委嘱한다.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重任할 수 있다.

第 7 條 各部會의 定期總會는 圖協定期總會의 即前에 開催하여 重要한 事項을 議決한다.

第 8 條 各部會의 總會는 所屬會員 5分1之以上的 出席으로 成立하며 議事는 出席者過半數로 채定한다.

第 9 條 各部會의 經費는 다음의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 (一) 圖協交付金
- (二) 其他收入金

第 10 條 各部會는 每年 1回以上 그 部會의 活動 및 會計報告를 圖協會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 11 條 各部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为了하여 地域別로 協議會를 둘 수 있다. 協議會의 規程은 이를 따로 定한다.

附 則

本規程은 檄紀 4289年 4月 20日부로 施行한다.

社團法人 韓國圖書館協會委員會規程 (改正 4293年 1月 25日)

第 1 條 韓國圖書館協會(以下 圖協이라고 稱한다) 定款第條에 依하여 다음의 委員會를 둔다.

- (一) 技術委員會
- (二) 行政委員會

各委員會에 必要한 分科委員會를 둘 수 있다.

第 2 條 各委員會의 事務所는 委員長이 所屬하는 圖書館 내에 둔다.

第 3 條 各委員會는 理事會, 部會 및 委員會相互間의 緊密한 連絡下에 下外 如何 각 自의 專門 分野에 關하여 研究調查 및 그 實施促進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一) 技術委員會

- (1) 標準分類法의 制定, 普及, 改訂 및 分類法의 研究에 關한 事項
- (2) 標準編目規則의 制定, 普及, 改訂 및 編目規則의 研究에 關한 事項
- (3) 圖書館學 및 圖書館關係術語의 制定, 普及, 改訂, 研究에 關한 事項
- (4) 圖書館의 建築, 設備, 用品에 對する 基準規格의 制定普及 및 研究에 關한 事項
- (5) 綜合目錄編纂에 關한 事項
- (6) 其他 必要한 事項

(二) 行政委員會

- (1) 圖書館學의 教育에 關한 事項
- (2) 圖書館關係 諸法規의 整備, 研究에 關한 事項
- (3) 涉外業務에 關한 事項
- (4) 內外 圖書館 資料의 導入 및 交換貸借에 關한 事項
- (5) 其他 必要한 事項

第 4 條 各委員會는 圖協會員으로서 構成한다.

(一) 委員長 1人

(二) 分科委員長 1人

(三) 委員若干人

委員長은理事會의推薦으로 會長이委嘱한다.

委員은 委員長의 推薦으로 理事會의 認準을 거쳐會長이委嘱한다.

第 5 條 各委員會의 委員은 實務委員과 諸問委員으로 나눌수 있다.

(一) 實務委員은 그所管事項의 實務를擔當한다.

(二) 諸問委員은 實務委員會의 諸問에應한다.

第 6 條 各分科委員會는 隨時로開催하여 議事는委員過半數出席으로成立하며 出席委員3分2之以上으로써 決定한다.

第 7 條 各委員會의 經費는 圖協交附金 및 其他收入金으로充當한다.

第 8 條 各委員會는 年 1回以上 그委員會의 活動 및 會計報告를 圖協會長에게 提出하여야한다.

附 則

本規程은 檀紀 4289年 4月 20日부터施行한다.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협의회 규약 준칙

제 1 조 본회는 ○○학교도서관 협의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는 한국도서관협회 부회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한다.

제 3 조 본회의 사무소는 간사장 제임학교 도서관내에 둔다.

제 4 조 본회는 학교도서관 사업의 진전 및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 학교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관

전에 관한 연구

- 도서관협회 및 타지구 학교도서관협의회와의 연락 및 협조
- 그밖에 본회 목적 달성을 필요 한 사항

제 6 조 본회의 회원은 학교도서관으로 한다 각학교도서관 담당자는 그대표가 된다.

제 7 조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 고문 약간명
 - 간사장 1명
 - 간사 약간명
-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그임기는 1년으로 한다.
고문은 회원도서관의 교장 및 관하게명사를 추대하며 간사는 본회 회원중에서 선임하고 간사장은 간사회에서 호선한다 간사장 유고할때는 간사장이 지명한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 8 조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가지며 간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총회는 년 1회로 하고 필요할 때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간사회는 매달 1회 개최하되 필요할 때는 임시간사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제 9 조 본회의 경비는 도서관협회 교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10 조 본회의 회계년도는 도서관협회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 11 조 본 규약은 총회의 의결과 도서관협회 이사회와 승인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 12 조 본 규약은 단기○○년○월○○일부터 시행한다.